

부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28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281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91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고경우, 김렬구, 김형욱

변론종결 2022. 6. 24.

판결선고 2022. 8. 19.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9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600,7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가.항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차용하되 피고가 이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3. 23. 1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6. 13. 피고 명의 계좌로 5,3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4,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변제받은 30,600,725원(= 2017. 3. 23.자 변제금 2,000만 원 + 2017. 6. 13.자 변제금 5,350만 원 -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자 2,899,275원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4,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매도인 주식회사 E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6. 위 회사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5,000만 원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역시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실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5,000만 원이라는 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2) 2017. 3. 23.자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35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7. 3. 23.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D이 2017. 3. 23.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2,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이전인 2017. 2. 20.경 I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자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고2),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42 지분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점, ② 위 가등기에 대한 해제증서는 2017. 3. 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위 가등기가 말소된 시점은 D이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3. 28.인 점, ③ 원고는 I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이 송금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대표자 D이 2017. 3. 23.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는 무관한 D과 I 사이 별도의 금전거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5,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350만 원(= 원금 5,000만 원 + 2017. 6. 13.까지의 일부 이자 35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이 4,000만 원이라거나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5,35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

1) 원고 주장 이자 합산액

2) 피고 제출의 2020. 9. 21.자 준비서면 첨부 '송금증' 참조